

일반대학원 화장품공학과 입학전형과 종합시험에 내규

1. 입학전형

본교 대학원 입학전형 학칙에 준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학과 내규로 정한다.

1.1 (일반전형) 일반전형의 선발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병행한다. 서류심사는 ① 대학 및 대학원 성적, ② 학업 및 연구계획서(대학원 소정양식)로 한다. 구술시험은 ① 전공에 대한 지식 및 적성, ②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 ③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예, 이루고자 하는 연구 또는 직업적인 목표의 구체성 등)으로 시행한다. 서류심사(30점 만점)와 구술시험(70점 만점)관련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은 본교 대학원 일반전형 배점기준표에 명시한다. 평가결과는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1.2 (특별전형) 4+1 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의 경우, 입학전형의 구술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1.3 (외국인전형) 외국인전형의 선발도 일반전형에 준하며,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을 병행한다.

1.4 (편입학전형) 편입학전형의 선발도 일반전형에 준하며,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을 병행한다.

1.5 기타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결정한 후, 내규에 반영한다.

2. 종합시험

제1조(적용범위) 본 규칙은 대학원 화장품공학과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응시자격) ① 재학생, 연구등록을 필한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석사는 교과학점 16학점 이상, 박사는 교과학점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3.0 이상 이어야 한다. (2021.09.08.수정)

③ 4+1 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의 경우 SCI(E) 제출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을 할 경우, 관련 내규에 의거하여 종합시험이 면제된다. 만일, SCI(E) 제출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종합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2021.09.08.추가)

④ 기타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결정한 후, 내규에 반영한다.

제3조(시험과목) 대학원 화장품공학과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은 2과목, 박사학위과정은 3과목으로 한다.

제4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화장품공학과 사무실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위원) 시험위원 위촉에 있어, 학과장(2024.11.15. 수정)은 본 대학원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 중에서 석사학위과정은 2인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위촉하고 시험위원은 출제방향, 문항별 배점, 평가기준 등을 학과 주임교수와 협의 출제하

여 원활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제6조(문제 유형 및 배점)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하며, 석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과 연구 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과 능력을, 박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지식과 연구방법에 관한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단, 응시자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응시자가 과정 중 학점 취득한 교과목 중에서 응시과목을 정한다.

제7조(합격점수) 종합시험의 합격 인정 점수는 과목당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8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은 매학기 1회 시행하며, 3월과 9월에 시행한다. 단, 시행시기, 고사장소, 고사시간, 출제 교과목 확정은 따로 정한다.

제9조(시험결과 통지) 학과장은 종합시험 합격 유무를 시험종료 후 2주 이내에 해당 응시자에게 통지한다.

제10조(보충규정)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